



▶ 2009. 4. 28 배포
▶ 총 4 쪽 (사진없음)

보 도 자 료
▶ 고용보험정책과장 박형정
▶ 서기관 이창길
TEL : 2110-7204
E-MAIL : skygood@molab.go.kr
F A X : 502-2714

**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하면 체납보
험료 등 면제**
- 9인이하 사업장, 금년 5~7월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-

- 노동부는 「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·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이하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“특별신고기간”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.
 -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2008년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·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, 피보험자격취득신고, 보험료 납부를 하면 회사 설립이후 연체된 고용·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 부담금 등이 면제된다.
- 고용·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(☎ 1588-0755)에 성립신고를 하고, 성립신고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고용지원센터(☎ 1588-1919)에 하면 된다.
 -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

고용지원센터로 이송, 처리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한다.

- 그리고,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9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보험료는 내년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·납부만 하면 되고, 올해 개선보험료 신고·납부는 면제된다.
 - * 현행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연도 중 보험성립 신고를 한 사업장은 그 보험연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신고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선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확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
- “특별신고기간”중에 자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체납된 고용·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가산금·연체금,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
 -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의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한다.
-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산재보험의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.
 -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할 때 피보험기간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나, 본인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2009년12월31일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1. 특별신고기간

- 특별조치법에 의한 고용·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은 '09.5.1~'09.7.31까지 운영

- * 특별조치법에서는 2009년 7월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정하여 고시토록 정하고 있음(\$4)

2. 특별신고 대상

- 특별신고기간 내에 신고대상은 '08.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 근로자 9인 이하의 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
 - 미가입 사업장 : '08.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 9명 이하 사업장
 - 미가입 근로자 : '08.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 9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신고가 안 된 근로자
 - * 이미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미가입(신고 누락) 근로자도 포함

3. 특별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시 혜택

-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, 부담금, 가산금·연체금, 과태료 면제
 - * 과거 최대 3년간 체납된 고용·산재보험료와 가산금·연체금, 임금채권 부담금과 가산금·연체금, 고용·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·납부와 관련된 과태료, 피보험자격신고와 관련된 과태료
 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의무(금년도 보험료 납부, 피보험자신고 등)을 이행한 경우에만 혜택 부여

4. 보험료등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

-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음

-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면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소급취득(3년 한도*) 허용
 - * 현행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소급취득도 3년 이내에서만 가능
- 수감지원금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지원을 제한하지 않음
- 산재보험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되 근로자에 대한 지원(보험급여 청구권)은 유지, 임금채권부담금도 해당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한을 하지 않음
 - * 산재보험법상 미가입 재해는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%를 징수